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

제안년월일 : 2006. 12. .
제 안 자 : 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2006. 10. 17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의 현지교통비를 조정하고, 일부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

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비고란 중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급범위를 조정 하여야 할 경우 시행령의 개정이 없을 경우에도 조례를 개정 지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구분의 현지교통비에 “(1일당)” 을 추가하고 , 영등포구의원의 현지교통비란 중 “10,000”을 “20,000”으로 , 동표의 비고란 1. 중 “출석” 을 각각 “출장” 으로, 비고란 3. 중 “이 영” 과 별표2의 비고란 2. 중 “이 영” 을 각각 “지방자치법시행령”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